

# 문맹인 난민신청자 사례로 본 난민심사의 문제점

일시: 2023년 6월 28일 오전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최: 난민인권센터 케이스팀

문의: [refucenter@gmail.com](mailto:refucenter@gmail.com)

## 난 민법 제2장 5조 3항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문맹이나 교육받은 정도가 낮은 비호신청자

문해력(디지털 문해력 포함)

정보 접근성

개인의 삶 영역 밖의 문제

# 문맹인 난민은 문맹인이 아닌 것처럼 대우(?)받습니다.

대리인에게 맡긴 난민신청서에 자신이 구술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을 면접조사를 통해 발견했지만, 그 이후 다시 접수한 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어지는 심사 과정에서도 법에 명시된 어떠한 행정 조력도 출입국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면접조사에서는 문맹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아랍어 통역의 오역 남발과 월권행위가 수 차례 발생하였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신청인은 그 사실을 시민단체(난민인권센터)의 조력으로 난민면접녹화영상을 시청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조사를 한 지 3년이 지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접을 토대로 불인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난민신청서를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신청인은 체류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미등록체류자로 분류되어 범칙금 150만원을 청구 받고 그 때문에 체류비자를 받지 못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 사례에서 드러난 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 >

대리인(출입국 직원이 아닌)이 작성한 신청서

- 1 내용 확인 (신청인은 직접 확인 못함)
- 2 대리인 신분 확인 및 서명
- 3 신청인과 출입국의 직접 소통(내용/절차)

< 사례에서 드러난 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 >

## 면접 조사

- 1 신뢰할 수 없는 통역
- 2 평가받지 않는 통역
- 3 면접조사 영상 녹화본 검토의 어려움

## 1차 면접심사

- 조사관이 물어보지 않은 질문을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고압적인 어조로 취조 하 듯 질문하며, 그 내용은 조사관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사관 역시 두 사람 만의 대화를 중단시키는 것 이외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인이 진술을 구체적으로 꺼내려 할 때 통역인이 고압적인 어조로 제지하여 신청인이 중요한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견됩니다.
- 신청인의 교육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학력자가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질문하여,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신청인에게 단어의 뜻을 설명하지 않고 같은 단어로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도 목격되었습니다.
- 면접조사를 시작할 때 통역인이 신청인에게 질문하지 말고 자기가 묻는 질문에 대답만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때문에 면접조사를 마치고 전 내용 리뷰시간에도 신청인은 자신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간에 질문을 하려고 몇 번 시도하였는데 그 때마다 통역인은 신청인의 질문을 무시한 채 리뷰내용을 빠르게 읽기만 했습니다.

[박해 사항]관련 조사에서 기록된 질문 “**신청인이 어떤 문제를 겪었나요. 혹은 위협이 있었나요?**”에, 신청인은 “**위협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조사관이 ‘위협을 생명, 혹은 신체에 실제로 해를 입었거나, 해를 입을까 두려웠던 적이 있는지’로 풀어서 질문한 기록이 나옴.

여기에서 통역인은 “위협”이라는 단어를 신청인에게 통역한 것이 아니라 아랍어로 “Addhaad”로 발음되는 “박해 또는 억압”을 의미하는 단어로 통역을 하였고, 신청인은 여기에 그 뜻을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임. 이 단어는 신청인처럼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하고 평생을 레바논 팔레스타인 난민캠프에서 살아온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용 단어가 아니고 학술, 언론, 책에서 나오는 **고급 단어에 속함**. 신청인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할 환경에 있지 않았음. 통역인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이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들렸음**. 신청인이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자, 통역인은 “괴롭힘에 대해 묻는 게 아니다(I’m not asking you about the harassment.). 박해를 받은 적이 있는가?(Have you been persecuted?)” 라고 다시 “Addhaad”로 발음되는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신청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신청인을 위축시킴.



**교사의 체벌이 두려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설명했으나**, 이해를 못하며 질문을 반복 함. 왜 교사를 두려워했나? 그냥 공부를 싫어해서냐? 그냥 숙제 하기가 싫어서냐? 이런 게 교사를 무서워할 만한 이유가 되는가? 등으로 조서에 기록된 질문 방식(어감)과는 엄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통역인 문제뿐만 아니라, 조사관의 질문 역시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했던 체벌에 대해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공부를 하지 않은 이유, 학교의 환경, 교사의 자질 및 품성 등 실질적인 교육기회가 주어진 것이 맞는지 면접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이 빠져 있음.

신청인이 같은 반에 17명 또는 18명 학생이 있었고 그 중 팔레스타인 난민 학생 11명 중 신청인 이외에 8명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답변하며 그 이유를 선생님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으나 곧 바로 일자리 관련 질문으로 넘어 감.

질문 대한민국 처음 입국했을 때에는 왜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답변 “일단 한국을 구경하고 한국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연장을 받고 한국에 20일 더 있다가, 가족을 보러 돌아갔다가, 레바논에서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자’고 결정했던 것입니다.”로 기록되어  
있음.

빠진 부분))

레바논 돌아가니 다른 집단 간 충돌이 캠프 안팎에서 벌어져 다친 사람이 많았고 그 두 그룹이 용병으로 사람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려고 해서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 한국으로 돌아가 비호 신청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답변.

## 2차 면접심사

- 문장의 주어를 혼동하고 병명을 전혀 다르게 통역하는 등의 기본적인 **통역 수준**의 문제
- 신청인이 통역인의 아랍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이 영상에서 확인됩니다.
- 통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대강 **추측만 할 뿐**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함.
- 통역인이 제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전달하는지 동석한 **조사관은** 통역인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만약 대한민국에서 팔레스타인에 입국하면 신청인에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들어가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 내용은 녹음 내용과 다른 결로 확인됨. 실제 녹음된 질문은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출발하여 팔레스타인으로 입국할 수 있겠나?

(어감 확인 위해 다음에 나오는 영어 번역(아랍어를 영어로 그대로 옮김) 참조:: **Am I a**

**Korean who will have problems if he enters Palestine from the Republic of Korea?**

문법, 어법 모두 틀리고 완전히 다른 뜻을 전달하였음. 이로 인해, 신청인은 언어적으로 부정확한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 한국인인 통역인이 팔레스타인으로 입국하는 것을 묻는 다고 해석하여, 들어가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답하게 됨.

신청인이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다가 레바논 사람들에게 쫓기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통역하면서 신청인 친구들을 신청인 가족으로 반복해서 이야기 함. 이렇게  
아랍어로 혼동하여 이야기한 것과 조사관에게 한국어로 전달하는 내용이  
달랐음(조사관에게는 친구들이라고 전달함).

질문 정치 혹은 종교 집단이 신청인을 위협한 일이 있었나요?

답변 없었습니다.

.....

질문 실제로 헤즈볼라나 아말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건가요?

답변 네

.....

질문 신청인을 괴롭힌 사람들이 헤즈볼라나 아말이었나요?

답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질문 저는 헤즈볼라나 아말과 같은 조직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물었는데요.

답변 아니요. 그런 단체 사람처럼 보이는 자를 봤다 싶으면 얼른 도망쳤지요.

질문 이 외에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주변이 레바논 단체로부터 받은 피해는 없고요?

답변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캠프 밖에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조서에 기록. 여기에서도 통역 오류.

실제 신청인의 답변은 “캠프 밖에 나가는 걸 점점 피하게 되어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이었음.  
이 표현은 이전에 벌어진 위험한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캠프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어감을  
내포함.

가족이 병원에 간 적 있는지 통역인이 질문하고 신청인은 어머니가 얼굴 일부가 마비되어 병원에 가셨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됨.

하지만, 이 내용은 실제 답변과 전혀 다름. 신청인은 어머니가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가셨다고 대답했음.



## 난민 면접에서 통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려면

- 신청인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할 수 있게 필요한 내용을 검토 하여 면접을 준비 해야합니다.
- 이를 위해 신청인의 환경, 문화, 교육수준, 언어 능력(이해할 수 있는 언어 수준과 답변을 구술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 또한, 면접을 마친 후, 신청자의 언어 능력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언어 사용에 불일치가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통역과 면접의 현장 감독
- 통역을 정확하게 감시할 제 3자가 배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면접 실시 기관의 영상녹화발부와 검토는 통역의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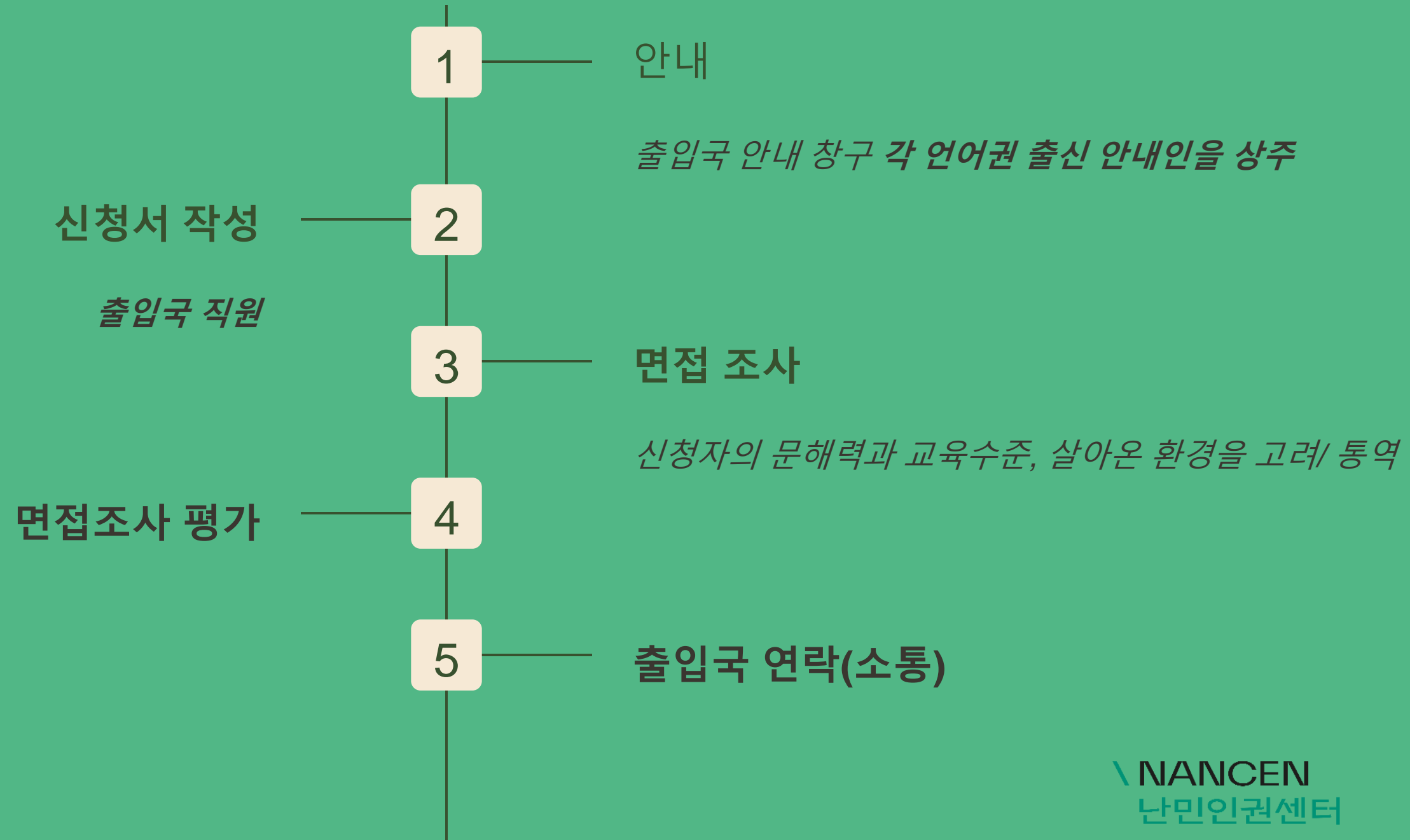
< 사례에서 드러난 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 >

불인정사유서

COI조사

이의신청

# 문맹인 난민신청자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 고맙습니다!

김예현, 여름, 장보민, 정유진, 하정윤, 이광희

아랍어 통번역:  
Saghir Mohammed

김연주, 박경주, 최영란